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547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 박해철・박 정・추미애

김우영 · 강유정 · 임호선

문금주 · 장종태 · 조인철

최민희 • 이기헌 • 강준현

임미애・김 현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사용자를 견제·감시하며 공공성 강화 및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이사제'의무 도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의무도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정 불비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법률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 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 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 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임원) ① ~ ③ (생 략)	제16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
	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
	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
	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